

보도 일시	2022. 5. 29.(일) 12:00 2022. 5. 30.(월) 조간	배포 일시	2022. 5. 29.(일) 12:00	
담당 부서	산업안전보건본부 직업건강증진팀	책임자	팀 장	김순영 (044-202-8890)
		담당자	사무관 주무관	서상훈 (044-202-8891) 김영남 (044-202-8895)

물·그늘·휴식으로 여름철 열사병을 예방!

-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-

□ 고용노동부(장관 이정식)는 여름철(6월~8월)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, 5월 30일부터 9월 초까지 「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」을 추진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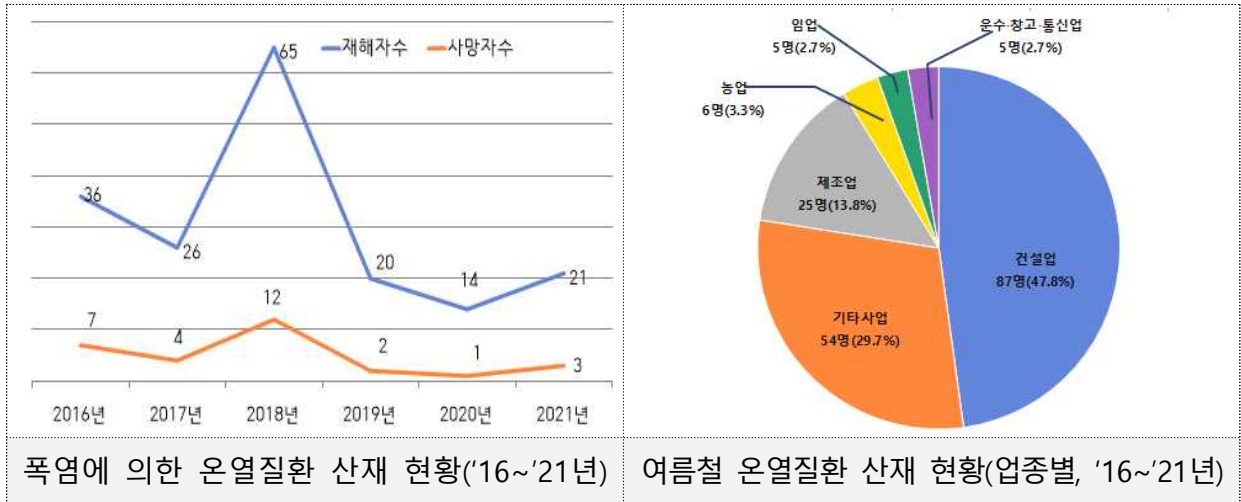
○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년의 폭염일수가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며 올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40~50%로 전망*하고 있다.

* ▲(5,6월) 낮음 20%, 비슷 40%, 높음 40% ▲(7월) 낮음 20%, 비슷 30%, 높음 50%

□ 최근('16~'21년)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는 총 182명이 발생했고, 이 중 29명(15.9%)이 사망하는 등 폭염은 근로자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.

○ 특히, 햇빛에 직접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많이 하는 건설업에서 온열질환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*했으며, 더위가 시작하는 6월부터 시작하여 7월과 8월에 집중해서 발생하므로 이 시기에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.

* '16~'21년 건설업에서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가 87명(182명 중 47.8%) 발생하고, 이 중 사망자는 20명을 차지



□ 고용노동부는 우선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민간재해예방기관·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폭염특보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, 열사병 예방 3대 수칙(물·그늘·휴식)을 집중 홍보*할 방침이다.

* 출퇴근 시간대 라디오 방송, 산업안전 전광판(전국 40개), 안전보건공단 블로그, 안전보건관리자 밴드 등 사회관계 서비스망(SNS)

○ 특히, 올해 ‘열사병 예방 이행가이드’에는 폭염으로 인해 실내온도가 올라가는 작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.

< 열사병 예방 이행 가이드 주요 내용(상세 내용 붙임 참고) >

- ◇ (물)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및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
- ◇ (그늘)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햇볕을 차단하고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휴식 공간 제공
- ◇ (휴식) 폭염특보 발령 시 시간당 10~15분씩 규칙적인 휴식시간 배치,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
 - ▶ 근로자가 폭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의 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조치
 - ▶ 폭염특보시 외부온도로 인해 **실내온도가 높은 실내작업장**의 경우에는 냉방·환기 등을 통해 실내온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조치하고, 사업장 상황에 따라 필요시 업무량 조정, 휴식 등 추가대책 수립

□ 아울러, 6월 초에는 사업장 스스로 자율점검(5.30.~6.17. 3주간)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도록 하고,

* 자율점검표, 열사병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, 온·오프라인을 통해 집중 홍보

- 6월부터 9월 초까지 ‘**온열질환 예방 집중 지도·점검 기간**’으로 정해, 이 기간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각종 지도·점검 시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예방수칙 준수를 지도한다.
- 이와 함께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을 지도하는 전국의 **건설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(216개)**과 **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(364개)**을 통해 열사병 예방지도를 강화하고,
 -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공공근로·발주공사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.
-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“열사병 예방을 위해서는 ▲폭염특보 등 기상 상황 수시 확인, ▲근로자에게 폭염정보 제공, ▲3대 기본수칙 (물·그늘·휴식)의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고”
- “특히, 폭염에 의한 열사병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므로 사업주는 미리 각 사업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”라고 강조하면서
- “올여름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는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”라고 당부했다.

물 그늘 휴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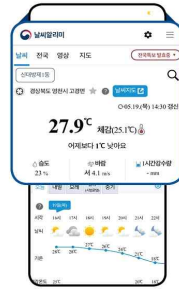
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

✓ 폭염 특보는 기상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주의보·경보 발령




- 기상청 「날씨누리(www.weather.go.kr) 홈페이지 및 날씨알리미 앱」 첫 화면의 온도 옆 “체감(00℃)”으로 표시
- * 체감온도 : 여름철 낮은 습도에서 현재 온도보다 덜 덥게 느끼고, 높은 습도에서는 더 덥게 느끼는 것을 반영한 온도
기온에 습도, 바람 등의 영향을 더해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

- 폭염 주의보**
 - 일 최고 체감온도 33℃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
 -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

- 폭염 경보**
 - 일 최고 체감온도 35℃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
 -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



✓ 물 그늘 휴식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입니다.

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. /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
그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(휴식 공간)를 마련하여야 합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하고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합니다. - 소음·낙하물·차량통행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합니다. - 쉬고자 하는 근로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의자나 돛자리,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비치합니다.
휴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~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폭염주의보 발령 시 매시간 10분, 폭염경보 발령 시 매시간 15분 ✓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무더위 시간대(14~17시) 옥외작업을 피해야 합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업무량이나 속도를 줄이거나 신체부담이 덜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. ✓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 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 ▲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함으로써 충분히 생산적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.

◆ 폭염특보 시 외부온도로 인해 실내·외 온도차가 발생하지 않거나 실내온도가 실외온도보다 높은 실내 사업장은 아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.

- (예시) 천막창고 등 임시 시설 내 작업공간 또는 연면적이 넓은 등 작업장 특성상 전체 냉방이 곤란한 작업장
- 실내 온도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작업장 내 냉방장치*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.
 - * 주요 냉방장치 : 공기순환장치(환기장치), 선풍기, 냉풍기, 이동식 에어컨 등
 - 냉방장치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창문이나 출입문을 여는 등 더운 공기가 실내에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아이스조끼·아이스팩 등 보냉장구를 지급·착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 - 냉방장치 설치, 환기 등의 조치에도 실내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경우 원인을 파악한 후 추가 대책을 수립*하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.
 - * 냉방장치 추가 설치 및 작업장 환기 방법 개선 ⇒ 불가피한 경우 업무량 조정 및 휴식 시간 부여, 긴급하지 않은 작업은 일정 계획 변경
- ※ 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폭염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옥외작업의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을 참조하세요.

☑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에 따라 조치하십시오.

※ 지역별 폭염 단계는 기상청 「날씨누리(www.weather.go.kr) > 날씨 > 기상특보 > 영향예보 > '산업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관심

체감온도
31°C 이상

- ✓ 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(또는 날씨알리미 앱) 등을 통해 기상 상황 확인, 근로자에게 폭염 정보 제공
- ✓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(휴식 공간) 준비
- ✓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 및 작업강도가 높은 힘든 작업 사전 확인·구분

• 온열질환 민감군이란?

- ▲ 비만, 당뇨, 고혈압/저혈압 등 질환자 ▲ 온열질환 과거 경력자 ▲ 고령자 ▲ 폭염 노출작업 신규배치자

• 작업강도가 높은 힘든 작업이란? 육체적으로 업무강도가 높은 작업으로 열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쉬운 작업을 말함

- (작업 예시) 삼·망차·톱·곡괭이·도끼를 이용하거나 건설현장에서 형틀·철근·타설 작업 등 전신을 움직이는 작업 또는 중량물을 수작업에 의해 반복적으로 들고 내리거나 취급하는 작업

주의

체감온도
33°C 이상

또는 폭염주의보

- ✓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(휴식 공간) 제공
- ✓ 매시간 10분씩 그늘(휴식 공간)에서 휴식하기
 -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힘든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
- ✓ 무더위 시간대(14시~17시)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
- ✓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조끼,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



경고

체감온도
35°C 이상

또는 폭염경보

- ✓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(휴식 공간) 제공
- ✓ 매시간 15분씩 그늘(휴식 공간)에서 휴식하기
 -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힘든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
- ✓ 무더위 시간대(14시~17시)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
 - 불가피한 옥외작업 시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
- ✓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조끼,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
- ✓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 옥외작업 제한



위험

체감온도
38°C 이상

- ✓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(휴식 공간) 제공
- ✓ 매시간 15분 이상씩 그늘(휴식 공간)에서 휴식하기
 -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힘든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
- ✓ 무더위 시간대(14시~17시)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
 - 긴급작업을 할 경우에는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
- ✓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조끼,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
- ✓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 옥외작업 제한

☑ 응급상황 대처 (주요 증상 발현시)

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, 열탈진 등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,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!

※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힘든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건강상태를 작업전·후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


폭염 시에는 항상 안전사고를 주의하세요!!

- 안전모 및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각별히 유의
- 집중력저하로 인한 떨어짐, 넘어짐 등 안전사고 유의

